

1. 관련 근거

- 가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3항
- 나.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3항
- 다.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표준협약서 제17조

2. 적용 대상

가. 사전 승인 대상사업

- 기초연구사업 전체(일반연구 제외) : 2008.07.21 규정 제정 당시 시점 기준(신규 + 계속)과제부터 적용
- 일반연구(기본,신진,지역,여성) : 2009년 이후 신규 선정 과제부터 적용
- ※ 단, (舊)특정기초-우수신진연구는 상기 “기초연구사업 전체” 내용 적용

나. 사전 승인 대상자

- 연구책임자가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 중 국내외 파견(교육훈련 포함), 해외체류 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

다. 사전 승인 대상기간

- 2008.07.21 - 2009.12.28 : 1년 이상(12개월 포함)
- 2009.12.29 - 현재 : 6개월 이상(6개월 포함)

3. 적용 내용(‘11.02.01부터 시행)

구분	접수 및 검토	제재조치	
		참여제한(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참여)	연구비환수
사전 신청	정상접수 (불가 또는 승인 통보)	없음	없음
중도 신청	정상접수 (불가 또는 조건부 승인 통보)	없음(경고 조치)	정밀정산 및 환수 (신청일 이전기간까지)
사후 신청	단순접수 (승인 불가)	참여제한 1년 이내	정밀정산 및 환수 (미승인 파견기간)
未신청 (적발)	적발즉시 경위서 제출요구 (승인 불가)	참여제한 1년	정밀정산 및 환수 (미승인 파견기간)

※ 사전 및 중도 신청과제 검토결과 “승인불가”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해당과제 연구책임자 “임의파견”시에는 참여제한 1년 및 연구비 정밀정산·환수 조치

4. 시행 시기(유예 및 계도기간 이후 '11.02.01일 부터 시행)

가. 전국 대학 등 주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연구사업 『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』 규정 적용 상세 안내 및 유예 및 계도기간* 이후 시행

* 유예 및 계도기간 : '11.1.5~1.31일까지

나. 유예 및 계도기간 중 사후 승인 신청된 과제 및 연구책임자는 참여제한 조치 없이 연구비 환수만 시행

【유예 및 계도기간 중 적용 내용】

구분	접수 및 검토	제재조치	
		참여제한 (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참여)	연구비 환수
사전 신청	정상접수 (불가 또는 승인 통보)	없음	없음
중도 신청	정상접수 (불가 또는 조건부 승인 통보)	없음	정밀정산 및 환수 (신청일 이전기간까지)
사후 신청	단순접수(승인 불가)	없음	정밀정산 및 환수 (미승인 파견기간)
未신청 (적발)	적발즉시 경위서 제출 요구 (승인 불가)	참여제한 1년	정밀정산 및 환수 (미승인 파견기간)

5. 기타사항

가. 사전 승인요청은 파견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해당 사업팀에 공문으로 신청

나. 참여제한기간은 해당과제 연구종료시점(종료/중단과제의 경우 조치시점) 부터 적용

다. 연구비 환수 대상

- 연구책임자 미승인 파견기간 동안 현지 사용한 연구비 전체 환수
- 해당 과제 전체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 후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

※ 별첨 : 기초연구사업 『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』 관련 규정

【 별첨 】

관련 근거	내 용(조항 및 내용)	비고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	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 ② 생략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(교육훈련을 포함한다)하려고 하거나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
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처리 규정	제15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)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 ② 생략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사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>	
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처리 규정 표준협약서	제17조 (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) ① (을)과 (병)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, 동법 시행령, 공동관리규정, 시행규칙,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 ② (갑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(을)과 (병),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-7 생략 8. 그 밖에 공동관리규정, 시행규칙, 처리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: 1년	